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0-65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의회 의원 활동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(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) 규정에 위반되어, 우리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(안 제4조제2항)

-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'구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구의회의원 2인, 실무협의체 위원장' 중 '구의회 의원 2인'을 삭제하고자 함

나. "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"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전반)

3. 주요토의과제

"해당없음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(구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

- (1) 입법예고 : 2010.9.2 ~ 9.22(제출된 의견 없음)
- (2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10.09.30)
- (3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(4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건의 하거나”를 “건의하거나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단체간의”를 “단체 간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과 제5항 중 “자중에서”를 “사람 중에서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구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구의회의원 2인,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”를 “구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“1인”를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하며”를 “하며,”로 “보궐

된”을 “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”를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의시”를 “회의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과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지체 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당해사무소”를 “해당 사무소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조 제목 중 “공청회등의”를 “공청회 등의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관계인등에게는”을 “관계인 등에게는”으로 하고,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사무공간등”를 “사무공간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에 따라 <u>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</u>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·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<u>건의 하거나</u>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①~② (생략) ③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·<u>단체간의</u>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 ④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</u> 제2조(설치) 제3조(기능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<u>단체 간의</u>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<u>당해</u>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<u>하며 보궐된</u>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위원의 임기) <u>해당</u></p> <p>..... <u>하며, 위원의 결원으로</u> <u>새로 위촉된</u></p>
<p>제8조(위원의 해촉)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<u>기타의</u>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<u>당해</u>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위원의 해촉) <u>그 밖의</u></p> <p>..... <u>해당</u></p>
<p>제9조(간사 및 직원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<u>회의시</u>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 ③ 각 협의체는 <u>당해</u>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</p>	<p>제9조(간사 및 직원) ① <u>1명</u>... ② <u>회의 시</u></p> <p>..... ③ <u>해당</u></p>
<p>제10조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<u>당해</u>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<u>당해</u>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 ③~④ (생략)</p>	<p>제10조(회의 등) ① <u>해당</u></p> <p>..... <u>지체 없이</u></p> <p>..... ② <u>해당</u> 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

